

창원자이 더 스카이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2566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3.20.(금)	2026.04.29.(수)	2026.05.04.(월)	2026.05.08.(금)	2026.05.11.(월)~ 2026.05.13.(수)	2026.05.15.(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9.(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02**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2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75**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5.04.(월)	2026.05.08.(금)	2026.05.11.(월)~2026.05.13.(수)	2026.05.15.(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창원자이 더 스카이 견본주택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번길 10-12)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창원시 성산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4.07.)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무순위 (사후)
전매제한기간	없음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9-4,5,6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5~49층 4개동 총 519세대 중 일반분양 509세대 중 잔여 431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최초 공급 세대수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02	01	084.9951A	84A	246	196	101	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1701,1801,1901,2101,2201,2301,2401,2501,2601,2701,2801,2901,3001,3101,3201,3301,3401,3501,3601,3701,3801,3901,4001,4201,4301,4401,4501,4701,4801
						102	403,5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1803,1903,2103,2203,2403,2503,2603,2703,2903,3103,3203,4303,4603
						103	401,403,501,503,601,603,701,703,801,803,901,903,1001,1003,1101,1103,1201,1203,1301,1303,1401,1403,1501,1503,1601,1603,1701,1703,1801,1901,1903,2101,2103,2201,2203,2401,2403,2501,2603,2701,2901,3003,3101,3301,3401,3501,3503,3601,3701,3703,3801,3901,3903,4001,4101,4201,4301,4401,4403,4503,4601,4701
						104	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403,1503,1601,1603,1701,1703,1801,1803,1901,1903,2101,2103,2201,2203,2301,2303,2401,2403,2501,2503,2601,2603,2701,2703,2801,2803,2901,2903,3001,3003,3101,3103,3201,3203,3301,3303,3401,3403,3501,3503,3601,3603,3703,3801,3803,3901,3903,4001,4003,4101,4103,4201,4203,4301,4303,4401,4403
	02	084.9016B	84B	86	80	101	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1702,1802,1902,2102,2202,2302,2402,2502,2602,2702,2802,2902,3002,3202,3302,3402,3502,3602,3802,3902,4002,4102,4402,4502,4702,4802
						104	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1702,1802,1902,2102,2202,2302,2402,2502,2602,2702,2802,2902,3002,3102,3202,3302,3402,3502,3602,3702,3802,3902,4002,4102,4202,4302,4402,4502
	03	084.9771C	84C	88	71	102	502,602,702,802,902,1002,1102,1202,1402,1602,1902,2102,2202,2302,2402,2502,2702,2802,2902,3002,3102,3202,3602,3802,3902,4102,4202,4302,4402,4502,4602,4702
						103	402,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1702,1802,1902,2302,2402,2502,2602,2702,2902,3002,3102,3202,3402,3502,3602,3702,3802,3902,4002,4202,4302,4402,4502,4602,4702,4802
	04	084.8846D	84D	44	42	102	401,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1701,1801,1901,2101,2201,2401,2501,2601,2701,2801,2901,3001,3101,3201,3301,3401,3501,3601,3701,3801,3901,4101,4201,4301,4401,4501,4601,4701,4801
	05	106.5247A	106A	45	42	101	403,503,603,703,803,903,1003,1103,1203,1303,1403,1503,1603,1703,1803,2103,2203,2303,2403,2503,2603,2703,2803,2903,3003,3103,3203,3303,3403,3503,3603,3703,3803,3903,4003,4203,4303,4403,4503,4603,4803,4903
합 계				509	431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표기	동호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임주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12.21.	2027.07.20.	2028.02.21.	2028.12.20.	2029.06.20.	2029.12.20.	
84A	104동3호	14	1	182,457,600	643,142,400	-	825,600,000	10,000,000	31,28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82,560,000	288,960,000
		15~18	4	184,402,400	649,997,600	-	834,400,000	10,000,000	31,720,000	83,440,000	83,440,000	83,440,000	83,440,000	83,440,000	83,440,000	292,040,000
		19~21	2	187,673,200	661,526,800	-	849,200,000	10,000,000	32,46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84,920,000	297,220,000
		22~24	3	186,325,100	656,774,900	-	843,100,000	10,000,000	32,155,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84,310,000	295,085,000
		25~29	5	187,098,600	659,501,400	-	846,600,000	10,000,000	32,33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296,310,000
		30~34	5	187,872,100	662,227,900	-	850,100,000	10,000,000	32,505,000	85,010,000	85,010,000	85,010,000	85,010,000	85,010,000	85,010,000	297,535,000
		35~39	5	188,645,600	664,954,400	-	853,600,000	10,000,000	32,680,000	85,360,000	85,360,000	85,360,000	85,360,000	85,360,000	85,360,000	298,760,000
		40~44	5	189,419,100	667,680,900	-	857,100,000	10,000,000	32,855,000	85,710,000	85,710,000	85,710,000	85,710,000	85,710,000	85,710,000	299,985,000
	101동1호	4~6	3	180,645,400	636,754,600	-	817,400,000	10,000,000	30,870,000	81,740,000	81,740,000	81,740,000	81,740,000	81,740,000	81,740,000	286,090,000
		7~9	3	182,590,200	643,609,800	-	826,200,000	10,000,000	31,310,000	82,620,000	82,620,000	82,620,000	82,620,000	82,620,000	82,620,000	289,170,000
		10~14	5	184,557,100	650,542,900	-	835,100,000	10,000,000	31,755,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292,285,000
		15~18	4	186,524,000	657,476,000	-	844,000,000	10,000,000	32,2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295,400,000
		19~21	2	189,839,000	669,161,000	-	859,000,000	10,000,000	32,95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300,650,000
		22~24	3	188,468,800	664,331,200	-	852,800,000	10,000,000	32,640,000	85,280,000	85,280,000	85,280,000	85,280,000	85,280,000	85,280,000	298,480,000
		25~29	5	189,264,400	667,135,600	-	856,400,000	10,000,000	32,820,000	85,640,000	85,640,000	85,640,000	85,640,000	85,640,000	85,640,000	299,740,000
		30~34	5	190,037,900	669,862,100	-	859,900,000	10,000,000	32,995,000	85,990,000	85,990,000	85,990,000	85,990,000	85,990,000	85,990,000	300,965,000
		35~39	5	190,811,400	672,588,600	-	863,400,000	10,000,000	33,170,000	86,340,000	86,340,000	86,340,000	86,340,000	86,340,000	86,340,000	302,190,000
		40~44	4	191,607,000	675,393,000	-	867,000,000	10,000,000	33,35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303,450,000
		45층이상	3	192,380,500	678,119,500	-	870,500,000	10,000,000	33,525,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304,675,000
	104동1호	4~6	2	185,463,200	653,736,800	-	839,200,000	10,000,000	31,96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293,720,000
		7~9	3	187,474,300	660,825,700	-	848,300,000	10,000,000	32,415,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84,830,000	296,905,000
		10~14	5	189,485,400	667,914,600	-	857,400,000	10,000,000	32,870,000	85,740,000	85,740,000	85,740,000	85,740,000	85,740,000	85,740,000	300,090,000
		15~18	3	191,496,500	675,003,500	-	866,500,000	10,000,000	33,325,000	86,650,000	86,650,000	86,650,000	86,650,000	86,650,000	86,650,000	303,275,000
		19~21	2	194,899,900	687,000,100	-	881,900,000	10,000,000	34,095,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88,190,000	308,665,000
		22~24	3	193,507,600	682,092,400	-	875,600,000	10,000,000	33,780,000	87,560,000	87,560,000	87,560,000	87,560,000	87,560,000	87,560,000	306,460,000
		25~29	5	194,303,200	684,896,800	-	879,200,000	10,000,000	33,96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307,720,000
		30~34	5	195,098,800	687,701,200	-	882,800,000	10,000,000	34,140,000	88,280,000	88,280,000	88,280,000	88,280,000	88,280,000	88,280,000	308,980,000
		35~39	4	195,916,500	690,583,500	-	886,500,000	10,000,000	34,325,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88,650,000	310,275,000
		40~44	5	196,712,100	693,387,900	-	890,100,000	10,000,000	34,505,000	89,010,000	89,010,000	89,010,000	89,010,000	89,010,000	89,010,000	311,535,000
	103동3호	4~6	3	187,363,800	660,436,200	-	847,800,000	10,000,000	32,390,000	84,780,000	84,780,000	84,780,000	84,780,000	84,780,000	84,780,000	296,730,000
		7~9	3	189,397,000	667,603,000	-	857,000,000	10,000,000	32,85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85,700,000	299,950,000
		10~14	5	191,430,200	674,769,800	-	866,200,000	10,000,000	33,31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86,620,000	303,170,000
		15~18	3	193,463,400	681,936,600	-	875,400,000	10,000,000	33,77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87,540,000	306,390,000

		19~21	2	196,911,000	694,089,000	-	891,000,000	10,000,000	34,550,000	89,100,000	89,100,000	89,100,000	89,100,000	89,100,000	89,100,000	311,850,000
		22~24	2	195,496,600	689,103,400	-	884,600,000	10,000,000	34,230,000	88,460,000	88,460,000	88,460,000	88,460,000	88,460,000	88,460,000	309,610,000
		25~29	1	196,292,200	691,907,800	-	888,200,000	10,000,000	34,410,000	88,820,000	88,820,000	88,820,000	88,820,000	88,820,000	88,820,000	310,870,000
		30~34	1	197,109,900	694,790,100	-	891,900,000	10,000,000	34,595,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89,190,000	312,165,000
		35~39	3	197,927,600	697,672,400	-	895,600,000	10,000,000	34,78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89,560,000	313,460,000
		40~44	1	198,723,200	700,476,800	-	899,200,000	10,000,000	34,96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89,920,000	314,720,000
		45층이상	1	199,540,900	703,359,100	-	902,900,000	10,000,000	35,145,000	90,290,000	90,290,000	90,290,000	90,290,000	90,290,000	90,290,000	316,015,000
	103동1호	4~6	3	192,270,000	677,730,000	-	870,000,000	10,000,000	33,5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304,500,000
		7~9	3	194,369,500	685,130,500	-	879,500,000	10,000,000	33,975,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87,950,000	307,825,000
		10~14	5	196,446,900	692,453,100	-	888,900,000	10,000,000	34,445,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88,890,000	311,115,000
		15~18	4	198,524,300	699,775,700	-	898,300,000	10,000,000	34,915,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314,405,000
		19~21	2	202,060,300	712,239,700	-	914,300,000	10,000,000	35,715,000	91,430,000	91,430,000	91,430,000	91,430,000	91,430,000	91,430,000	320,005,000
		22~24	2	200,601,700	707,098,300	-	907,700,000	10,000,000	35,385,000	90,770,000	90,770,000	90,770,000	90,770,000	90,770,000	90,770,000	317,695,000
		25~29	3	201,441,500	710,058,500	-	911,500,000	10,000,000	35,575,000	91,150,000	91,150,000	91,150,000	91,150,000	91,150,000	91,150,000	319,025,000
		30~34	3	202,259,200	712,940,800	-	915,200,000	10,000,000	35,760,000	91,520,000	91,520,000	91,520,000	91,520,000	91,520,000	91,520,000	320,320,000
		35~39	5	203,099,000	715,901,000	-	919,000,000	10,000,000	35,95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91,900,000	321,650,000
		40~44	5	203,938,800	718,861,200	-	922,800,000	10,000,000	36,140,000	92,280,000	92,280,000	92,280,000	92,280,000	92,280,000	92,280,000	322,980,000
		45층이상	2	204,756,500	721,743,500	-	926,500,000	10,000,000	36,325,000	92,650,000	92,650,000	92,650,000	92,650,000	92,650,000	92,650,000	324,275,000
	102동3호	4~6	2	194,259,000	684,741,000	-	879,000,000	10,000,000	33,95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87,900,000	307,650,000
		7~9	3	196,358,500	692,141,500	-	888,500,000	10,000,000	34,425,000	88,850,000	88,850,000	88,850,000	88,850,000	88,850,000	88,850,000	310,975,000
		10~14	5	198,458,000	699,542,000	-	898,000,000	10,000,000	34,9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314,300,000
		15~18	3	200,557,500	706,942,500	-	907,500,000	10,000,000	35,375,000	90,750,000	90,750,000	90,750,000	90,750,000	90,750,000	90,750,000	317,625,000
		19~21	2	204,137,700	719,562,300	-	923,700,000	10,000,000	36,185,000	92,370,000	92,370,000	92,370,000	92,370,000	92,370,000	92,370,000	323,295,000
		22~24	2	202,657,000	714,343,000	-	917,000,000	10,000,000	35,85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320,950,000
		25~29	4	203,496,800	717,303,200	-	920,800,000	10,000,000	36,040,000	92,080,000	92,080,000	92,080,000	92,080,000	92,080,000	92,080,000	322,280,000
		30~34	2	204,336,600	720,263,400	-	924,600,000	10,000,000	36,230,000	92,460,000	92,460,000	92,460,000	92,460,000	92,460,000	92,460,000	323,610,000
		40~44	1	206,038,300	726,261,700	-	932,300,000	10,000,000	36,615,000	93,230,000	93,230,000	93,230,000	93,230,000	93,230,000	93,230,000	326,305,000
		45층이상	1	206,878,100	729,221,900	-	936,100,000	10,000,000	36,805,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93,610,000	327,635,000
	84B	4~6	3	177,905,000	627,095,000	-	805,000,000	10,000,000	30,25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281,750,000
		7~9	3	179,827,700	633,872,300	-	813,700,000	10,000,000	30,685,000	81,370,000	81,370,000	81,370,000	81,370,000	81,370,000	81,370,000	284,795,000
		10~14	5	181,750,400	640,649,600	-	822,400,000	10,000,000	31,120,000	82,240,000	82,240,000	82,240,000	82,240,000	82,240,000	82,240,000	287,840,000
		15~18	4	183,673,100	647,426,900	-	831,100,000	10,000,000	31,555,000	83,110,000	83,110,000	83,110,000	83,110,000	83,110,000	83,110,000	290,885,000
		19~21	2	186,966,000	659,034,000	-	846,000,000	10,000,000	32,3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296,100,000
		22~24	3	185,617,900	654,282,100	-	839,900,000	10,000,000	31,995,000	83,990,000	83,990,000	83,990,000	83,990,000	83,990,000	83,990,000	293,965,000
		25~29	5	186,391,400	657,008,600	-	843,400,000	10,000,000	32,17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295,190,000
		30~34	5	187,142,800	659,657,200	-	846,800,000	10,000,000	32,340,000	84,680,000	84,680,000	84,680,000	84,680,000	84,680,000	84,680,000	296,380,000
		35~39	5	187,916,300	662,383,700	-	850,300,000	10,000,000	32,515,000	85,030,000	85,030,000	85,030,000	85,030,000	85,030,000	85,030,000	297,605,000
		40~44	5	188,689,800	665,110,200	-	853,800,000	10,000,000	32,690,000	85,380,000	85,380,000	85,380,000	85,380,000	85,380,000	85,380,000	298,830,000
		45층이상	1	189,463,300	667,836,700	-	857,300,000	10,000,000	32,865,000	85,730,000	85,730,000	85,730,000	85,730,000	85,730,000	85,730,000	300,055,000

	101동2호	4~5	2	184,557,100	650,542,900	-	835,100,000	10,000,000	31,755,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83,510,000	292,285,000
		6	1	186,656,600	657,943,400	-	844,600,000	10,000,000	32,230,000	84,460,000	84,460,000	84,460,000	84,460,000	84,460,000	84,460,000	295,610,000
		7~9	3	188,667,700	665,032,300	-	853,700,000	10,000,000	32,685,000	85,370,000	85,370,000	85,370,000	85,370,000	85,370,000	85,370,000	298,795,000
		10~14	5	190,678,800	672,121,200	-	862,800,000	10,000,000	33,140,000	86,280,000	86,280,000	86,280,000	86,280,000	86,280,000	86,280,000	301,980,000
		15~18	4	192,712,000	679,288,000	-	872,000,000	10,000,000	3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305,200,000
		19~21	2	196,137,500	691,362,500	-	887,500,000	10,000,000	34,375,000	88,750,000	88,750,000	88,750,000	88,750,000	88,750,000	88,750,000	310,625,000
		22~24	3	194,723,100	686,376,900	-	881,100,000	10,000,000	34,055,000	88,110,000	88,110,000	88,110,000	88,110,000	88,110,000	88,110,000	308,385,000
		25~29	5	195,540,800	689,259,200	-	884,800,000	10,000,000	34,240,000	88,480,000	88,480,000	88,480,000	88,480,000	88,480,000	88,480,000	309,680,000
		30~34	4	196,358,500	692,141,500	-	888,500,000	10,000,000	34,425,000	88,850,000	88,850,000	88,850,000	88,850,000	88,850,000	88,850,000	310,975,000
		35~39	4	197,154,100	694,945,900	-	892,100,000	10,000,000	34,605,000	89,210,000	89,210,000	89,210,000	89,210,000	89,210,000	89,210,000	312,235,000
		40~44	3	197,971,800	697,828,200	-	895,800,000	10,000,000	34,790,000	89,580,000	89,580,000	89,580,000	89,580,000	89,580,000	89,580,000	313,530,000
		45층이상	3	198,767,400	700,632,600	-	899,400,000	10,000,000	34,97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89,940,000	314,790,000
84C	102동2호 103동2호	4~6	5	189,794,800	669,005,200	-	858,800,000	10,000,000	32,940,000	85,880,000	85,880,000	85,880,000	85,880,000	85,880,000	85,880,000	300,580,000
		7~9	6	191,850,100	676,249,900	-	868,100,000	10,000,000	33,405,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303,835,000
		10~14	9	193,905,400	683,494,600	-	877,400,000	10,000,000	33,870,000	87,740,000	87,740,000	87,740,000	87,740,000	87,740,000	87,740,000	307,090,000
		15~18	5	195,960,700	690,739,300	-	886,700,000	10,000,000	34,335,000	88,670,000	88,670,000	88,670,000	88,670,000	88,670,000	88,670,000	310,345,000
		19~21	3	199,452,500	703,047,500	-	902,500,000	10,000,000	35,125,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315,875,000
		22~24	5	198,016,000	697,984,000	-	896,000,000	10,000,000	34,8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313,600,000
		25~29	8	198,833,700	700,866,300	-	899,700,000	10,000,000	34,985,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314,895,000
		30~34	7	199,651,400	703,748,600	-	903,400,000	10,000,000	35,170,000	90,340,000	90,340,000	90,340,000	90,340,000	90,340,000	90,340,000	316,190,000
		35~39	8	200,469,100	706,630,900	-	907,100,000	10,000,000	35,355,000	90,710,000	90,710,000	90,710,000	90,710,000	90,710,000	90,710,000	317,485,000
		40~44	8	201,286,800	709,513,200	-	910,800,000	10,000,000	35,540,000	91,080,000	91,080,000	91,080,000	91,080,000	91,080,000	91,080,000	318,780,000
		45층이상	7	202,104,500	712,395,500	-	914,500,000	10,000,000	35,725,000	91,450,000	91,450,000	91,450,000	91,450,000	91,450,000	91,450,000	320,075,000
84D	102동1호	4~6	3	189,308,600	667,291,400	-	856,600,000	10,000,000	32,83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299,810,000
		7~9	3	191,341,800	674,458,200	-	865,800,000	10,000,000	33,290,000	86,580,000	86,580,000	86,580,000	86,580,000	86,580,000	86,580,000	303,030,000
		10~14	5	193,397,100	681,702,900	-	875,100,000	10,000,000	33,755,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87,510,000	306,285,000
		15~18	4	195,452,400	688,947,600	-	884,400,000	10,000,000	34,22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88,440,000	309,540,000
		19~21	2	198,922,100	701,177,900	-	900,100,000	10,000,000	35,005,000	90,010,000	90,010,000	90,010,000	90,010,000	90,010,000	90,010,000	315,035,000
		22~24	2	197,485,600	696,114,400	-	893,600,000	10,000,000	34,680,000	89,360,000	89,360,000	89,360,000	89,360,000	89,360,000	89,360,000	312,760,000
		25~29	5	198,325,400	699,074,600	-	897,400,000	10,000,000	34,87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89,740,000	314,090,000
		30~34	5	199,143,100	701,956,900	-	901,100,000	10,000,000	35,055,000	90,110,000	90,110,000	90,110,000	90,110,000	90,110,000	90,110,000	315,385,000
		35~39	5	199,960,800	704,839,200	-	904,800,000	10,000,000	35,24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316,680,000
		40~44	4	200,778,500	707,721,500	-	908,500,000	10,000,000	35,425,000	90,850,000	90,850,000	90,850,000	90,850,000	90,850,000	90,850,000	317,975,000
		45층이상	4	201,596,200	710,603,800	-	912,200,000	10,000,000	35,610,000	91,220,000	91,220,000	91,220,000	91,220,000	91,220,000	91,220,000	319,270,000
106A	101동3호	4~5	2	236,336,112	833,058,080	83,305,808	1,152,700,000	10,000,000	47,635,000	115,270,000	115,270,000	115,270,000	115,270,000	115,270,000	115,270,000	403,445,000
		6	1	238,919,468	842,164,120	84,216,412	1,165,300,000	10,000,000	48,265,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116,530,000	407,855,000
		7~9	3	241,502,835	851,270,150	85,127,015	1,177,900,000	10,000,000	48,895,000	117,790,000	117,790,000	117,790,000	117,790,000	117,790,000	117,790,000	412,265,000
		10~14	5	244,086,191	860,376,190	86,037,619	1,190,500,000	10,000,000	49,525,000	119,050,000	119,050,000	119,050,000	119,050,000	119,050,000	119,050,000	416,675,000
		15~18	4	246,690,050	869,554,500	86,955,450	1,203,200,000	10,000,000	50,16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421,120,000

	19~21	1	251,077,648	885,020,320	88,502,032	1,224,600,000	10,000,000	51,230,000	122,460,000	122,460,000	122,460,000	122,460,000	122,460,000	122,460,000	428,610,000
	22~24	3	249,273,406	878,660,540	87,866,054	1,215,800,000	10,000,000	50,790,000	121,580,000	121,580,000	121,580,000	121,580,000	121,580,000	121,580,000	425,530,000
	25~29	5	250,298,545	882,274,050	88,227,405	1,220,800,000	10,000,000	51,040,000	122,080,000	122,080,000	122,080,000	122,080,000	122,080,000	122,080,000	427,280,000
	30~34	5	251,323,684	885,887,560	88,588,756	1,225,800,000	10,000,000	51,290,000	122,580,000	122,580,000	122,580,000	122,580,000	122,580,000	122,580,000	429,030,000
	35~39	5	252,369,326	889,573,340	88,957,334	1,230,900,000	10,000,000	51,545,000	123,090,000	123,090,000	123,090,000	123,090,000	123,090,000	123,090,000	430,815,000
	40~44	4	253,394,476	893,186,840	89,318,684	1,235,900,000	10,000,000	51,795,000	123,590,000	123,590,000	123,590,000	123,590,000	123,590,000	123,590,000	432,565,000
	45층이상	4	254,440,118	896,872,620	89,687,262	1,241,000,000	10,000,000	52,050,000	124,100,000	124,100,000	124,100,000	124,100,000	124,100,000	124,100,000	434,350,000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안내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신한은행	140-015-664424	(주)한국토지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입된 분양대금은 모계좌(신한은행 140-015-664424, 예금주 (주)한국토지신탁)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두 가능)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①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20% (2026.12.21)	잔금70% (입주시)
84A	16,500,000	1,650,000	3,300,000	11,550,000
84B	16,500,000	1,650,000	3,300,000	11,550,000
84C	16,500,000	1,650,000	3,300,000	11,550,000
84D	16,500,000	1,650,000	3,300,000	11,550,000
106A	19,800,000	1,980,000	3,960,000	13,860,000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관련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 또는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계약금	140-015-664521	(주)한국토지신탁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시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입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모계좌(신한은행 140-015-664521)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 본 무순위 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PLUS 옵션 (유상), 가전옵션(유상)**) 세부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5.08.(금) ~ 2025.05.17.(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5.0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자격확인 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 기간	2026.05.11.(월) ~ 2026.05.13.(수) 3일간 / 10:00 ~ 16:00
제출 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번길 10-12, 창원자이 더 스카이 견본주택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발급)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발급)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출입국 기록여부를 “Y”로 설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발급)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한정, 대리인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창원자이더스카이 사업주체]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5.15.(금)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9.(수)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증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견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견본주택 비치 ● 아파트 공급대금 및 유상옵션 합산 금액이 6억원 초과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요
대리인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한정, 대리인발급용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추후 일정 공개

※ 당첨자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선정 진행 시 별도 연락예정입니다.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기준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창원중앙피에프브이(주)	도담에스테이트 (주)	지에스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2층 (역삼동,부봉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18층 (역삼동, 센터필드웨스트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법인등록번호	110111-8207907	110111-1554511	110111-0002694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xi.co.kr/CWJ>)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번길 10-12

■ 분양 문의 : 1833-2566